



해외 경쟁정책 동향

• 본 연합회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카드 회사와의 법정 소송에서 승리

일리노이주 연방지방법원은 Peter J. Porcelli II세와 그가 소유하고 있는 Bay Area Business Council, Inc.나 American Leisure Card Corp.와 같은 플로리다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 제기한 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해 영구적인 중지 명령을 내렸다.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미리 수수료를 받고 낮은 이율의 신용카드인 마스터 카드를 제공했었다.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이른바 “one-time processing” 수수료만을 지불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밖의 부가적인 수수료도 의도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런 식으로 피고들은 수많은 소비자들의 이익을 갈취했다. 이에 법원은

FTC가 요청한 즉결 재판을 열고 12,563,962.34 달러를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지난 2002년 8월에 FTC는 Bay Area Business Council, Inc., Bay Area Business Council Customer Service Corp., American Leisure Card Corp., Peter J. Porcelli II, Christopher Tomasulo와 Bonnie A. Harris를 유사한 케이스로 제소했고, 같은 해 10월에 FTC는 Bay Memberships, Inc., Bay Vacations, Inc., Sr. Marketing Consultants, Inc. 및 Special Technologies, Inc.를 추가 기소한 바 있다.

피고들은 소비자들에게 저리의 이자만 납부하면 되는 마스터카드를 지불해 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기 전에 그들의 은행 계좌에서 미리 수수료를 인출해 갔다. 은행계좌에서는 보통 199달러 이상의 수수료가 빠져 나갔으며, 발급해 주겠다던 마스터

신용카드는 소비자들에게 도달되지 않았다. 그 대신 마스터 카드 로고가 찍힌 일명 “멍텅구리” 카드를 받았는데, 카드 앞면에는 “Bay Area Business Council” 또는 “1st American Leisure Card”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검정색 마그네틱 선도 없는 카드 모양이었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원래 약속했던 마스터 신용카드의 발급을 요구하면 피고들은 추가 수수료를 받고 이번에는 은행 예금을 직접 인출·예입할 수 있는 카드인 debit card를 발급해 주었으며, 신용카드는 끝까지 발급해주지 않았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에게 만일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비자들의 은행계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어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과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일정한 수수료를 내게 된다는 설명도 해주지 않았다.

연방지방법원의 John W. Darrah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수수료를 미리 받아 챙길 목적으로 소비자들

을 유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한도액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추후에 신용카드를 발급할 의도도 없었고 발급하지도 않았다는 점 및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점 등이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전화판매법(Telemarketing Sales Rule)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Peter Porcelli와 Bonnie Harris는 이러한 행위들이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에 법원은 피고들의 텔레마케팅 활동과 신용카드 관련 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소비자들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잘못된 정보도 제공하지 말도록 했다. 그리고 FTC가 예상한 소비자 피해액수인 1,200만 달러 이상을 피고들의 고객명단에 기재되어 있는 소비자들에게 환급하도록 판결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 이행과정들을 FTC에 보고하도록 했다.

2004. 5. 13. 연방거래위원회

빌 게이츠, 기업결합신고의무 위반하여 벌금 물어

William H. Gates III가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하여 8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연방법무부가 발표했다. 독점금지국은 연방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워싱턴 D.C. 연

방지방법원에 1976년 하트-스코트-로디노법(Hart-Scott-Rodino Act)을 위반했다는 소를 제기했다.

제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게이츠는 자신의 개인 투자 회사를 통해 5천만 달러가 넘는 ICOS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업결합시의 사전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이츠는 사전신고의무 면제 조건인 “오로지 투자만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ICOS사의 기본 사업활동을 결정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특히 오래 전부터 ICOS사의 이사회 이사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ICOS사는 워싱턴주 Bothell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제약회사이다. 이 사건은 빌 게이츠가 회장으로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 관련 소송과도 무관한 것이다.

1976년 Hart-Scott-Rodino법은 개인이나 회사가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치를 가지거나 그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과 사전신고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하루당 최고 1만 1천 달러의 민사적 벌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소장에 따르면, 빌 게이츠는 지난 2002년 5월 9일부터 2002년 8월 26일까지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2004. 5. 3. 연방법무부

연방법무부, 이사업체에 가격고정 혐의로 벌금 부과

Cartwright International Van Lines Inc.(이하 Cartwright사)가 미 국방부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기로 공모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받고 25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미국 국방부는 그 동안 군인과 군무원들의 이삿짐 운송을 위해 Cartwright사와 거래를 해왔다.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지방 법원에 제출된 제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Cartwright사는 미 국방부 소속 군인 및 군무원들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 이들의 이삿짐을 운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가격고정을 공모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artwright사는 답변서를 통해 향후 정부의 조사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든 미군이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막는 일체의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R. Hewitt Pate 독점금지국장은 말했다.

최근 들어 미 국방부는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군인 및 군무원들의 이사비용으로 매년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드러난 이 사건은 그 동안 연방법무부가 국방부와 거래하는 이사업체들의 반독점적이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온 결과 적

발한 것이다. 이 조사는 독점금지국 형사집행부가 국방부 조사국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져 왔다. 이미 지난 2004년 2월 18일에도 벨기에에 위치한 이사용역업체와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사업체를 적발한 경험이 있다.

Cartwright사는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법인에 부과되는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 최고 한도는 위법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나 이를 통해 얻은 피해가 최고 한도보다 큰 경우에는 이익이나 피해액의 2배까지로 증액될 수 있다.

2004. 4. 29. 연방법무부

EU

EU위원회, 덴마크 공영방송사에 대한 국가보조금 초과분 완수 명령

EU위원회는 덴마크 공영방송사인 TV2/DANMARK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를 한 끝에, 약 8,440만 유로의 국가보조금을 환급하도록 명령했다. 조사결과 TV2/DANMARK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보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체로 공공서비스를 위한 국가 재정지원은 현행 국가보조금 규제하에서는 인정되고 있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순비용으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 순비용을 산정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수익을 고려한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위원회는 공공서비스 제공의 무를 부담하고 있는 TV2에 대한 국가보조가 순비용의 한도내에서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고려했다. 위원회는 TV2가 1995년에서 2002년간 약 8,440만 유로에 해당하는 비용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왔음을 밝혀냈다.

둘째, 위원회는 TV 광고 시장에서의 TV2의 행태를 분석했다. 공영 방송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부담하는데 드는 비용 이상의 보조를 받아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 방송사가 평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업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국가보조금을 더 지급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덴마크에서의 TV 방송 광고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기는 하지만, 위원회의 조사결과 TV2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위원회는 TV2 소유주인 덴마크 정부가 TV2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의 연간 초과분을 재투자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에서의 통상적인 투자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덴마크 정부가 보조금 중 초과분은 자기자본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이는 개인 투자들의 투자전략과는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이다. 덴마크 정부는 TV2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을 재투자하기 전까지는, TV방송국과 같은 시설에 대한 자기자본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덴마크 정부는 보조금의 초과분을 방송국에 적립시켜 두고 있었다. 따라서 EU위원회는 공적자금인 총 약 8,440만 유로를 TV2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대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환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이미 RAI(이태리), France 2와 3(프랑스) 및 RTP(포르투갈) 케이스에서의 위원회의 입장을 그대로 관철한 조치이다.

2004. 5. 19. EU위원회

EU위원회, 미디어사간의 기업결합 승인

EU위원회는 Liberty Media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UPC가 프랑스 케이블 방송 사업자인 Noos의 주식을 취득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경쟁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승인했다. 지난 4월 4일 위원회는 UPC가 Noos의 주식을 프

랑스 그룹사인 Suez로부터 매입하겠다는 신고를 접수받은 바 있다.

UPC와 Noos는 모두 프랑스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케이블 사업자로서, 특히 유료 TV, TV 콘텐츠 구입, 인터넷, 전화 및 통신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France Telecom Cable과 Vivendi Group 소속의 NC Numericable은 프랑스 케이블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를 위해 위성이나 ADSL 등을 이용하는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으며, UPC와 Noos가 경쟁하고 있는 시장과는 다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비록 UPC가 프랑스 케이블 유료 TV시장에서 비중이 더 커지더라도, 프랑스 유료 TV시장에서 가장 우세한 지위에 있는 Canal+와 비교하면 아직 상당한 영향력이 없는 상태이며, 더욱이 프랑스 위성 유료 TV사인 TPS와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텔레콤이 여전히 시장의 리더로서 독주를 하고 있다.

시장을 좀 더 좁혀서 케이블 유료 TV만을 관련시장으로 보는 경우에도, 위원회는 UPC가 NC Numericable이나 France Telecom Cable과 당해 시장인 케이블 유료 TV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인접시장인 TV콘텐츠, 위성, 및 ADSL을 이용한 유료 TV시장에서도 경쟁 관계에 있

을 것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또한 공중파 TV방송사들이 케이블 TV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반대로 UPC와 Noos의 결합이 프랑스 케이블 TV시장으로의 시장 확장 기회를 새로이 제공할 위험도 없는 것도 보았다.

UPC는 UnitedGlobalCom(이하 UGC)의 계열사로서 14개국에서 데이터, 음성 및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국제적인 광대역 통신사업자이다. 그리고 UGC는 세계적인 미디어, 연예 기획 및 통신기술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회사인 Liberty Media가 지배하고 있다.

이번 주식 매입 거래는 프랑스 통신 및 미디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케이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각 면허를 받지 않으면 8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가 완화되는 시기와 때를 맞추어 일어났다.

2004. 5. 18. EU위원회

독일

연방카르텔청, 제지 도매업자들의 가격담합에 대해 과징금 부과

연방카르텔청은 제지 도매업에 종사하는 12개 회사와 46명의 대표자들에 대하여 가격담합을 한 혐의로 총 5,76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방카르텔청의 심결서에 의하면

G. Schneider & Sohne GmbH & Co.와 Papier Union GmbH & Co. KG 등을 포함하여 12개 제지사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카르텔청은 모두 10여 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카르텔을 적발했는데, 이 중에는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개의 카르텔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이 카르텔들의 주요 내용은 각종 제지류에 대해 가격담합을 한 것이었다. 담합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내용을 담은 카르텔에 대해서도 1995년 5월부터 2000년 4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은 참가사업자들간에 맺고 있었던 합의내용을 수정하여 카르텔 협정을 만들었다. 가격담합은 이른바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대형 인쇄 업자들과 같은 특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제지 도매업자들에게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지도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도 함께 했다.

카르텔 협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들은 상호 모니터링을 했으며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르텔 참가 사업자들의 계열사들은 이 담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담합참가자들은 담합기간 종료 후에는 카르텔 협정내용을 지키지 않았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카르텔 협

정이 참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각각의 지역에서 경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하게 했다. 이러한 담합은 인쇄업자와 같은 직접적 고객들뿐만 아니라 최종 소비자와 같은 간접적 고객들에게까지 해를 준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결정적인 요인은 “지난 2000년 4월의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수많은 중소경쟁사들이 조사절차에서 연방카르텔청을 도와 많은 증언과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방카르텔청장은 “담합 사업자들에게 법위반의 대가를 철저히 치르도록 해야 한다. 지난 1993년부터 노스 라인/베스트팔렌주 경쟁당국이 부과한 총 175만 마르크의 과징금을 부과해 왔는데, 이 정도는 너무 약한 제재조치라고 본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이번 연방카르텔청의 과징금 부과 명령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연방카르텔청장은 “유사한 사례에서 피심인들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들의 수익을 계속 올리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다가올 경쟁제한방지법의 개정에서 논의되고 있듯이 과징금 부과일로부터의 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항소법원인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지나친 항소에 의한 부담을 경감

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규정은 EU위원회의 카르텔 제재절차에서는 이미 존재한다. 물론 이러한 규정이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카르텔 참가사업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04. 5. 4.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지역방송사간 기업결합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하일브론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Radio TON-Regional Hörfunk GmbH & Co. KG(이하 Radio TON-Regional) 사가 노이트링겐 지역의 Lokalradio Services GmbH(이하 Lokalradio Services)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역 라디오 광고에 있어서 유일한 경쟁자들인 이들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향후 동일한 하나의 회사인 Medien Union GmbH에 의해 광고시장이 통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Lokalradio Services는 바덴 뷔템베르크 통신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서 튀빙겐, 노이트링겐 및 졸렌-알프 지역의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지방에서 라디오 광고가 송출되는 지역이 관련시장이 된다. 이 관련시장에서는 Antenne Radio GmbH & Co. KG가 유일한 경쟁사

로서 활동하고 있다. “Hit Radio Antenne 1”이라는 라디오 채널을 가지고 노이트링겐 스튜디오에서 제작하는 지역방송 프로그램은 비교적 넓은 지역에 광고방송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Antenne Radio는 Sudwestdeutsche Medien Holding GmbH(이하 SWMH)의 간접적인 지배를 받고 있으며, 반대로 SWMH는 Radio TON-Regional의 주식을 취득하여 간접적으로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Medien Union GmbH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다. Medien Union사는 튀빙겐, 노이트링겐 및 졸렌-알프 지역의 지방 라디오 광고 방송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은 이들간의 기업결합을 금지하게 되었다.

연방카르텔청장은 “이번 사건은 우리 기업결합 규제가 대형 시장에서의 경쟁보호뿐만 아니라 소형 지역시장에서의 경쟁보호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는 시장에서의 경쟁사, 이 사건에서는 주로 그 지방의 소규모 광고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일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사회사들은 연방카르텔청의 결정에 대해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에 이의제기 할 수 있다.

2004. 4. 27. 연방카르텔청

프랑스

프랑스 경쟁평의회, 바게트 가격 협정에 제재금 부과

프랑스 경쟁평의회는 바게트의 가격 협정을 결론지음으로서 Federation departementale de la Boulangerie et Boulangerie Patisserie de la Marne(마르느제 빵·제과업자 연합) 및 26개 제과점에 제재금을 부과했다(연합으로 1억 5천 유로, 각 제과점에 300~5,700유로).

경제·재정부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경쟁평의회는 유로의 도입직전 바게트의 가격상승을 목적으로 한 카르텔에 참가함으로써 위반이 인정된 마르느제 빵·제과업자연합 및 26개 제과점에 제재금을 부과했다.

연합의 회장이 본 협정의 기획 및 계획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해낸 결정적 역할 및 회장의 의도적인 경쟁규칙(rule) 위반에 미루어 볼 때, 경쟁평의회는 형사벌의 가능성 검토를 위해 그를 검찰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유로 지폐·화폐가 프랑스 국내에서 유통하기 시작할 직전에 마르느제 빵·제과업자연합은 바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지침을 정했다.

2001년 4월 23일에 행해진 연합의 연차총회의 장소에서 회장은 노동시간의 단축 및 유로 도입의 결과 발생하는 절박한 비용상승을 강조함과

더불어, 산하업자에 대하여 바게트 가격의 동일한 가격상승을 행하도록 명확히 요청했다.

특히 회장은 공식 유로 도입기간(2002년 1월 1일 이후)은 당국이 가격의 안정성에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노동시간 주 35시간제의 도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여분의 비용을 커버하기 위한 가격상승을 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회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여 선수를 칠 필요성을 설명하고, 2001년 후반부터 바게트 가격을 4.90프랑(0.75유로)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마르느 내 다수의 제과점은 지침에 따랐다.

동 가격설정에 관한 지침은 조합(마르느제 빵·제과업자연합은 마르느시 각 군의 동업자조합의 연합체)의 대표자 활동(전화와 방문 등)에 의해 전체 업자에게 적극적으로 통지되었다. 특히 대표자는 연합의 회원이지만 총회에 결석한 제과점 및 회원이 아닌 제과점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DGCCRF(경제·재정·산업성 경쟁·소비자문제·부정행위방지총국)의 조사부문이 2001년 10월에 마르느 내 36개 제과점에 대해 행한 가격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73%의 제과점이 지침에 엄격히 따라 바게트 가격을 4.90프랑으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권장된 가격상승이 실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제과점

에게 이것은 30centime의 가격상승이 되며 여름 연차휴업 끝 무렵부터 실시되었다.

특히 중대한 행위

이번의 행위는 제과점에게 가장 일 반적으로 팔리는 상품시장에 있어서 경쟁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서 한층 악질이라고 경쟁평의회는 판단했다. 이 점에 관하여 경쟁평의회는 바게트가 프랑스 가정의 94%에서 소비되며, 62% 가정에서는 주식의 일부가 된다는 점, 또한 프랑스에서는 매일 1인당 평균적으로 160g의 빵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평의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역할은 특정산업의 이익을 당연히 준수하는 것이라는 업계단체가 맹업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이와 같은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 제한하려고 한다는 점은 전적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은 바게트의 통일가격을 권장한 것에서 업계의 이익을 준수한다고 하는 정해진 역할을 실제로 초과하였다. 각각의 소매점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자유롭고도 독립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연합이 제안한 액에 따라서 바게트 가격을 통일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연합은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할 목적의 행위를 하였다.

2004. 3. 12. 프랑스 경쟁평의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5월호 발췌

호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선전에 관하여 미디어에 주의를 촉구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미디어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는 미디어 자체가 단속의 대상이 되는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의를 촉구했다.

전국소비자의 날(3월 15일)에 개최된 멜버른 소비자법회의에서 ACCC의 Graeme Samuel 위원장은 「신속하고도 부단의 소비자보호를 기본으로 하여 거래관행법을 적용해 가는 것이 이제부터 ACCC의 우선과제이다」고 예고했다.

또한 「오인을 초래하고, 기만적인 행위 및 비양심적 행위에 관해서는 ACCC는 불리하고도 약한 입장의 소비자를 표적으로 하여 착취하려고 하는 행위에 특히 관심을 가진다」고 Samuel 위원장을 언급했다.

ACCC의 관심분야의 하나로서 광고대리점 및 미디어에게는 자신들이 작성 및 공표한 광고와 판매촉진활동에서 오인을 초래하거나 또는 기만적인 행위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확보할 책임이 있다는 견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열거된 것과 같이 광고의 작성 및 공표에 관여한 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 광고대리점이 사전에 작성한 광고
- 광고주가 작성하고 공표를 위해 미디어에 건네준 광고
- 미디어 또는 특정 종업원/사회자가 권장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광고
- TV 방송에 있어서는 TV 프로그램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는 「information」
- 최근의 유행에 관한 르포 또는 라이프스타일 프로그램처럼 보이게 하는 제품의 판매촉진. 특히 프로그램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에 근거한 보도라고 주장하거나, 프로그램의 웹사이트상에 제품이 링크 되는 등 실제로는 판매촉진이 행해지고 있는 것 같은 경우

ACCC의 견해에서는 오인을 가져오는 기만적인 광고의 작성, 방송 및 출판에 관여한 것은 누구라도 1974년 거래관행법에 위반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업자 및 출판사는 만일 오인을 초래하거나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공표한 경우 「출판측의 향변」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거래관행법 52조 위반이 된다. 이 향변은 출판사가 「당해 공표가 거래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는 점을 몰랐거나 그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을」 경우 이외는 기능하지 않는다.

Samuel 위원장은 「미디어가 광고가 오인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했거나 그것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 요컨대 이러한 경우이다.
 - 특히 감량, 운동 혹은 치료 또는 장래에 일어날 것에 관한 것일 경우, 광고의 주장이 지나치게 엉뚱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경우
 - 광고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과 명확하게 반대된다고 생각되어지는 경우. 이것에는 광고의 내용이 언뜻 보아 허위, 오인을 초래하거나 기만이라는 것이 합리적으로 분명한 경우도 포함된다.
 - 예를 들면, 광고되고 있는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 ACCC가 우려를 한다거나 법원의 심리가 계속중이라든가 하는 것을 깨달을 경우 등 출판업자가 광고의 정확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을 것 같은 상황의 경우
 - 미디어측에 이전에도 어떤 광고에 법준수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경험이 있다거나 불만이 있다거나 한 경우 ACCC의 견해로는 미디어에 의한 광고내용의 대본과 제작에의 관여가 크지 않았었다는 것과 광고가 프로그램과는 별개의 것으로 점차 판매촉진과 권장이라는 형태로 프로그램에 통합돼 오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미디어에 의한 광고내용에의 책임은 증대해 지고 있어 「출판측의 향변」이 꼭 적합하지 않았다.
- 대중은 구입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미디어를 포함

한 광고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사람들이 업계에 대해 거래관행법의 고도의 준수를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합리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는 허위, 오인을 유발하거나 기만적인 광고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및 절차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ACCC의 견해이다.

ACCC의 우려를 보강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신문사 및 방송면허사업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설명함과 더불어 이 문제에 관하여 ACCC가 상세한 심사를 행하는 것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다.

「ACCC의 staff는 거래관행법 위반의 의심으로 광고의 심사를 행한 경우, 관계 미디어의 책임 가능성으로도 고려한다」고 Samuel 위원장은 언급했다.

2004. 3. 15.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발표문
일본 월간 「공정취인」 2004. 5월호 발췌

일본

공정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업자에 대해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린그룹 주식회사(이하 그린그룹)에 대해 심사를 해온 결과, 그린그룹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19조(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2

항(재판매가격 유지의 구속)제1호 및 제2호에 해당)의 규정 위반을 이유로 권고조치 하였다.

그린그룹은 오이타현 히타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네랄 워터류의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그린그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스스로 또는 거래처 도매업자를 통해서 소매업자에게 그린그룹이 정한 희망소매가격을 유지시키는 조건을 붙여 자신의 상품을 판매해 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중지하는 동시에, 이러한 취지를 거래처 도매업자 및 거래처 소매업자에게 통지하고 일반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그린그룹은 이번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심리판결을 실시하며, 만일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결절차가 개시된다.

2004. 5. 21. 공정취인위원회

공정위, 건설회사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

공정위는 태신건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에 대해 2003년 12월 11일에 심판개시 결정을 하여 심판관을 지정, 심판수속을 진행해 왔으며, 2004년 5월 19일 피심인에 대해 독점금지법 제5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리판결을 하여 과징금 331만 엔(위반행위 동안의 매출액 1,046만

엔에 100분의 3을 곱해 얻은 금액)을 오는 7월 23일까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피심인은 태신건설 주식회사로서 치바시 이나게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목 건축공사의 청부업 등을 하고 있다. 피심인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치바시 및 재단법인 치바시 도시정비공사가 치바 시내에 본점 또는 주된 영업 거점을 두는 사업자만을 지명하는 지명경쟁입찰 또는 희망형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도장공사로서 발주하는 설계금액이 2,5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공사(이하 치바시 등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에 대해서 수주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그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치바시 등이 발주한 특정 도장공사 거래분야에 있어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

피심인의 위반행위 실행기간은 1998년 11월 14일부터 2001년 11월 13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있어서의 피심인의 매출액은 3건의 계약에 의해 정해진 대가의 액수를 합계한 총 1억 1,046만 엔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설계금액 2,500만 엔 미만의 물건이 과징금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의 적부가 심사관과 피심인간의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에 심판관은 이 사건에서 과징금 산정은 과징금과 관련되는 위반행위의 대상 역무의 매출액을 기초해서 산정되는 것인데, 해당 위반행위의 대상 역무는 설

계금액 2,500만 엔 이상 3억 엔 미만의 공사인 것이기 때문에 설계금액 2,500만 엔 미만의 공사와 관련되는 매출액을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2004. 5. 21. 공정취인위원회

독점금지법 개정 동향

공정위는 독점금지법의 개정에 대해서 지난 2002년 10월부터 독점금지법연구회를 개최해 검토를 해왔으며, 그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2003년 10월에 독점금지법연구회 보고서를 공표함과 동시에, 보고서에 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모집해 왔다. 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총 112건의 의견을 접수받았다. 독점금지법연구회의 검토작업과 병행하여, 일본 경제단체연합회(2003년 1월, 2월, 4월, 5월, 10월), 일본 상공회의소 및 토쿄 상공회의소(2003년 7월) 등과 의견교환을 실시해 왔다.

연구회 보고서 공표 후, 2003년 11월에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일본 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단체나 소비자단체, 일본 변호사연합회 등과의 회합도 개최하여 이미 접수받은 112건의 의견 이외에도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도 의견을 전달받았다. 그리고 2003년 12월 공정위는 독점금지법 개정에 관한 기본 틀을 작성하여 공표했다.

공정위는 이 기본 틀에 근거하여 관계 단체인 일본 경제단체연합회(2004년 1월, 3월, 4월), 일본 상공회의소·토쿄 상공회의소(2004년 2월), 전국 소비자단체연합회(2004년 1월) 등과 의견교환을 거듭하는 한편, 여당(자민당 독금법 조사회, 공명당 독금법 개정문제 프로젝트 팀)에 보고를 하는 등 그동안 독점금지법 개정안의 작성 작업을 진행시켜 법제적 검토를 거치고, 여러 관계 단체 및 여당과의 논의를 거친 「독점금지법 개정(안)의 개요 및 독점금지법 개정(안)의 기본 틀」을 정리하여 공표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특히 현행 과징금의 산정율을 2배 정도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2004. 5. 19. 공정취인위원회